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3.5.10(금) 9:30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유완백 의원 외 6명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1일

## 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중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일부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개정(안 제1조)
- 나. 귀농인 연령제한 삭제(안 제2조)
- 다. 귀농인 육성·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우리도의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중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일부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.